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-131호

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9일  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#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허청에 특허 및 상표·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 28명(6급 28명), 국민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상품 형태 모방행위 단속 인력 2명(6급 1명, 7급 1명) 및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인력 2명(7급 1명, 8급 1명)을 증원하고,

특허청 소속기관에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관 1명(4·5급 1명)과 국가자격증(변리사) 취득을 위한 교육 운영 인력 1명(7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며,

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,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

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00호, 2018. 3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
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 활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조정하고, 기획조정관의 분장사무 중 정부3.0을 정부혁신으로 조정하며,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 보임 규정을 4급에서 3·4급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호, 2018. . . 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심판관 보임규정을 직제와 일치하게 정비하며, 본부와 소속기관간 상호이체가 가능한 정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의견제출

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(참조: 혁신행정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

○ (우편번호: 35208)

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

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

전화: 042)481-8617, Fax: 042)472-3504

이메일: [violet498@korea.kr](mailto:violet498@korea.kr)

###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ipo.go.kr>) 「책자/통계-법령 및 조약-입법예고」를 참조하시거나, 특허청 혁신행정 담당관실(전화 042-481-8617, 팩스 042-472-350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